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845
----------	------

제출연월일: 2023. 10. 26.
제 출 자: 대구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위탁교육기관과 재계약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통해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명: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1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2항 및 제3항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6조(추진사업) 및 제8조(사무의 위탁)
-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의회의 동의)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학생의 흥미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학업중단 예방, 치유, 상담 및 교육(숙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

-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학생이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형 대안교육(학생 교육,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중 일일 출결상황, 상담결과 등 특이사항은 학교 담당교사에게 통보
- 학급 복귀 시 추수지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교적응 상황을 모니터링 후 해당기관 또는 관련기관 연결

라. 민간위탁 기간 : 3년(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마.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재계약

-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협의회 구성·운영: 민간위탁 운영 경험이 있는 검토위원 5명 선정, 종합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을 검토하여 검토(안)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재계약 추진(안) 동의: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재계약(안) 심의 및 동의(변호사, 세무사, 교수, 대안교육전문가, 관련 학교장 2명 총 6명)

바. 소요 예산액 : 588,860천원 ※ 기관별 계획에 따라 지원, 년도 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운영기관	24년 예산요구 (천원)	종합성과 평가결과 (점수)	추진 계획			
			기관별 예산교부액	재계약 적정성 심사(평점)	계약기간	향후 계획
동산Wee센터 (스콜라동산)	190,000	77.5	총액 588,860천원 (기관별 교부금은 평가 및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계약(안) 수립 시 확정)	재계약 (71점)	24.1.~24.12.(1년) (조기 재평가)	평가 만족 시 2년 재계약 추진
영남대의료원Wee센터 (두비교실)	190,000	93		재계약 (92점)	24.3.~27.2.(3년)	
대구가톨릭청소년회 (꿈뭉치)	100,000	91		재계약 (89점)	24.3.~27.2.(3년)	
(사)삼동청소년회 (봉무인디교육센터)	100,000	79.5		재계약 (75점)	24.3.~25.2.(1년) (조기 재평가)	평가 만족 시 2년 재계약 추진
서정길대주교재단 (가톨릭푸름터)	23,320	96.5		재계약 (95점)	24.3.~27.2.(3년)	
계	603,320		*총액 감소 (전년 대비)	재계약 적정성 심사 70점 이상 재계약 추진 가능		

- * 2024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축소로 전년(592,000천원)보다 3,140천원 감액된 588,860천원으로 예산 수립 추진 중
- 기관별 예산교부: 예산운영 적절성, 위탁 수수료 인원 등이 포함된 종합성과 평가결과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계약(안) 수립 시 기관별 총 합계액(588,86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
 - 기관별 계약기간
 - 재계약 적정성 심사 80점 이하 기관(2곳): 1년 재계약 후 평가(만족 시 2년 재계약)
 - 재계약 적정성 심사 80점 이상 기관(3곳): 3년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11175, 23.9.6.)

- (관계법)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8조,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민간운영 위탁 가능
- (적정성) 학교생활 부적응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보호 등 종합적인 전문서비스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성,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것이 능률적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추진현황(최근 3년)

(단위 천원, 명)

운영기관	21년		22년		23년		위탁대상 (학기당 정원)
	지원예산	수료생	지원예산	수료생	지원예산	수료생	
동산Wee센터 (스콜라동산)	283,000	10	175,000	15	190,000	15	정서적으로 어려운 고교생(10명)
영남대의료원Wee센터 (두비교실)	175,000	16	175,000	14	190,000	20	정서적으로 어려운 중학생(10명)
대구가톨릭청소년회 (꿈뚝자리)	90,000	17	90,000	22	100,000	26	학교생활 부적응 중학생 (20명)
(사)삼동청소년회 (봉무인디교육센터)	68,000	19	90,000	21	100,000	17	
서정길대주교재단 (가톨릭푸름터)	10,000	3	12,000	4	12,000	3	중·고생 미혼모 (발생 시)
계	626,000	65	542,000	76	592,000	81	

※ 21, 22년 수료생 수: 1학기, 2학기 수료생 수의 합

※ 23년 수료생 수: 1학기 수료생 수와 2학기 위탁교육생 수 합(23.10.기준)

※ 23년 2학기 정원 미달 기관은 추가 모집 중 (꿈뚝자리, 봉무인디교육센터)

※ 2024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축소로 전년(592,000천원)보다 3,140천원 감액된 588,860천원으로 예산 수립 추진 중

나. 관련법규: 붙임 1

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안): 붙임 2

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붙임 3

마. 민간위탁 계약서(안): 붙임 4

붙임 1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7.>
-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27.>

조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8. 2., 2023. 6. 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개정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2023. 6. 27.>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22. 8.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한 교육·상담·교원 연수 및 숙려제 운영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학업중단 학생의 재취학 및 재입학을 위한 상담·학습지원·교육·단기 보호 등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타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단순 행정사무
3.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예산 전액을 교부받거나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② 교육감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수탁기관 선정 방식
6. 소요 예산액
7.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계약의 체결)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기간
4. 민간위탁 사무 내용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위탁 추진계획

2023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안)

I 추진 개요

근거

-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603호, 2021.7.12.시행)
-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2021.9.)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제5855호, 2022.10.20.시행)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2013.6.)

목적

-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해소, 학업중단 예방 및 사회적응 지원
- 부적응 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

II 추진 내용

위탁 사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위탁 방법: 재계약 (수의계약)

위탁 사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 각 기관별 계약서 및 운영계획서로 같음

세부 위탁 내용

운영기관	24년 예산요구 (천원)	종합성과 평가결과 (점수)	추진 계획			
			기관별 예산교부액(천원)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및 재계약 적정성 심사(평점)	사무 위탁기간	계약기간
동산Wee센터 (스콜라동산)	190,000	77.5	예산액 및 교부방법은 최종 계약(안) 수립 시 평가 및 심사 결과, 예산운영 적절성, 위탁수료 인원 등을 검토하여 확정	민간위탁 적정, 재계약 (71점)	3년	24.1.~24.12.(1년) (조기 재평가)
영남대의료원Wee센터 (두비교실)	190,000	93		민간위탁 적정, 재계약 (92점)		24.3.~27.2.(3년)
대구가톨릭청소년회 (꿈뚝자리)	100,000	91		민간위탁 적정, 재계약 (89점)		24.3.~27.2.(3년)
(사)삼동청소년회 (봉무인디교육센터)	100,000	79.5		민간위탁 적정, 재계약 (75점)		24.3.~25.2.(1년) (조기 재평가)
서정길대주교재단 (가톨릭푸름터)	23,320	96.5		민간위탁 적정, 재계약 (95점)		24.3.~27.2.(3년)
계	603,320		588,860천원 (전년대비 감소)	재계약 적정성 심사 70점 이상 재계약 추진 가능		

* 예산교부 금액 및 계약기간은 년도 별 예산사정 및 위탁기관 이용 수요, 위원회 심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4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축소로 전년(592,000천원)보다 3,140천원 감액된 588,860천원으로 예산 수립 추진 중

Ⅲ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및 일정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 계획 수립 종합성과평가 결과 반영 위탁사무 내용, 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등 2023. 9. 4.(월)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종합성과결과를 반영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 (계약만료 90일전) 2023. 9. 5.(화)	⇒	시의회 동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별도일정(23.10.~)	⇒	예산편성 예산확정 시 별도일정(23.10.~)
---	---	--	---	---	---	--

⇒	시의회 동의 민간위탁 예산안 별도일정(23.11.~)	⇒	(재)계약 체결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의 해지, 사무편람 작성·비치, 지도점검 실시 등 반영 별도일정(23.12.~)	* 재계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를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를 위탁기관 만료 등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 심사위원회 결과 재위탁으로 결정될 경우 별도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 실시
---	--	---	--	--

붙임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안 건 명			심의결과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안) - 사무 위탁기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3년) - 기존 5개 위탁교육기관 재계약 동의 여부			가결
수탁기관명	재계약 기간	비 고	
동산Wee센터 스콜라동산	24.1.~24.12.(1년)	조기 재평가 (평가 만족 시 재계약 추진)	
영남Wee센터 두비교실	24.3.~27.2.(3년)		
대구가톨릭청소년회 꿈뭉자리	24.3.~27.2.(3년)		
(사)삼동청소년회 봉무인디교육센터	24.3.~25.2.(1년)	조기 재평가 (평가 만족 시 재계약 추진)	
서정길대주교재단 가톨릭푸름터	24.3.~27.2.(3년)		

붙임 4 **민간위탁 계약서(안)**

- ☞ 개별법령이나 상급기관 지침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 본 표준안은 해당 사무의 성격, 특성, 대상 등에 따라 계약서 항목 중 수정, 삭제, 신설 가능

대구광역시교육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위·수탁 표준계약서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교육감” 이 _____의 목적을 위해 _____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교육감” 과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교육감” 이 “수탁자”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1. 위·수탁사무

사무명	사무내용	비고

2.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설 : 대구광역시 ○○구 ○○로 ○○○번길 소재 △△△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그 밖에 “교육감” 과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

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등)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탁기간은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관련 사업 종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감” 과 “수탁자” 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 가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위·수탁기간 만료 120일전까지 문서로 “교육감” 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재산 및 장비의 관리) ① “수탁자” 는 수탁재산 및 장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 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 및 장비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 는 이에 관하여 “교육감”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 및 장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 는 “교육감” 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 는 이 계약 체결 후 “교육감” 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 및 장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는 천재지변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교육감” 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 은 “수탁자”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수탁자” 는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교육감” 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근로약정 이행 등)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교육감”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

계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는 제1항에 따라 “교육감” 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교육감” 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수탁자” 는 “교육감” 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정산서를 “교육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 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 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교육감” 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① “교육감” 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 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면 “수탁자” 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 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 는 “교육감” 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감사) ① “교육감” 은 연 1회 이상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② “수탁자” 는 제1항에 따른 감사에 대해 서류제출, 관계자 면담 등 감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은 “수탁자”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감” 은 제2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종합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 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수탁자” 는 종합성과평가 실시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재계약 평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른 민간위탁과 관련된 수탁기관 선정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이행의 보증) ① “수탁자” 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교육감” 이 지급하기로 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교육감” 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교육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은 “수탁자” 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교육감” 에게 귀속시킨다.

제15조(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수탁자” 는 위탁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까지 “교육감” 에게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 가 교육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 는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 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 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탁자” 가 “교육감” 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교육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교육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교육감”이 이 계약과 관련한 사업을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8.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감”과 “수탁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8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교육감” 과 “수탁자” 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는 “수탁자” 가 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교육감”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 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① “수탁자” 는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 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준수하여야 한 다.

제20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른다. 다만,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교육감”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약 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2. “교육감” 이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감” 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

③ “수탁자” 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교육감” 과 “수탁자” 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00일

“위탁자” 대구광역시교육감 000 (직인)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수탁자” 000 대표자 000 (인)
주소

주) 표준계약서는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